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49 발의연월일: 2021. 6. 22.

발 의 자: 송기헌·김승원·맹성규

박성준 • 백혜련 • 오영환

이성만 • 이원택 • 조응천

최기상 의원 (10인)

#### 제안이유

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,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, 부동산, 금융 등 공·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가.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사건사고, 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, 부모, 부양자 등으로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, 국내에 사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관광이나 방문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변동 관리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외국인사망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8

조제2항 개정).

- 나. 부동산거래, 임대차계약, 경매 등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「출입국관리법」이나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·발급 제도 신설 및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·교부 시에도 해당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함(안 제88조의3 신설).
- 다.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은 개별 법에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,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(거소신고증 포함)은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 따라서,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2항제1호 중 "대한 정보"를 "대한 정보, 외국인 사망자 정보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행정처분 정보"를 "행정처분 정보, 외국인 사망자 정보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대통령령"을 "외국인 사망자 정보, 대통령령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한옥체험업소의 현황"을 "한옥체험업소의 현황, 외국인 사망자 정보"로 한다.

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8조의3(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·교부)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(거소)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하 "외국인체류확인서"라 한다)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,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,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
  - 2.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, 임차인,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

- 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
  - 가.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
  - 나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
  -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
  - 라.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
-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, 열람·교부 신청절차, 수수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법무부장관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등 전입세대확인서 열람·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88조의4(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) ①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이나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국인에게 발급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

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

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절차,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(생	제78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	2
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	
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	
을 요청할 수 있다.	
1. 출입국심사(정보화기기를 이	1
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	
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	
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	
을 포함한다): 범죄경력정보	
• 수사경력정보, 여권발급정	
보・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	
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	
객에 <u>대한 정보</u>	<u>대한 정보, 외국인 사망자</u>
	<u>정보</u>
2.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	2
급 심사: 범죄경력정보・수사	
경력정보, 관세사범정보, 여권	
발급정보・주민등록정보, 사	
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	
한 정보, 납세증명서, 가족관	
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	
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<u>행정</u>	<u>행정</u>

#### 처분 정보

- 3.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: 범죄경력정보・수사경 력정보, 범칙금 납부정보 • 과 태료 납부정보, 여권발급정보 • 주민등록정보, 외국인의 자 동차등록정보, 사업자의 휴업 ·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, 납 세증명서, 외국인의 조세체납 정보,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 납정보,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 정보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 황 및 행정처분 정보, 숙박업 소 현황, 관광숙박업소의 현 황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의 현황, 한옥체험업소의 현 황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의 소득금액 정보
- 4. 출입국사범 조사: 범죄경력정보 · 수사경력정보, 외국인의범죄처분결과정보, 관세사범정보, 여권발급정보 · 주민등록정보, 외국인의 자동차등록

	처분_	정보,	외국인	인 사명	방자	<u>정</u>
	보					
3.						
			- – – – -			
					. — — —	
			사망지		<u>L</u> , 대	<u>통</u>
4.						

정보, 납세증명서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, 숙박업소 현황, 관광숙박업소의 현황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, 한옥체험업소의 현황

5. (생 략) 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		কু	<u>한옥체험</u>
업소의	현황,	외국인	사망자
<u>정보</u>			

- 5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88조의3(외국인체류확인서 열 람·교부)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 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 류지(거소)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하 "외국인체류 확인서"라 한다)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 ·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·면 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

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, 임차 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,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 인

- 2.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, 임차인, 매매계약자 또는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받은 자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 부를 신청하려는 자
  - <u>가.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</u> <u>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</u> <u>경우</u>
  - 나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 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 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 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
  -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용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.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

<신 설>

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

-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 항, 열람·교부 신청절차, 수수 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법무부장관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성명 등 전입세대확인서 열람・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.
- 제88조의4(외국인등록증 등의 진 위확인) ① 법무부장관은 「출 입국관리법」이나 「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국인에게 발급 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 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
  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절차,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